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6-5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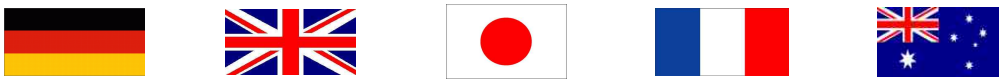

공무원 정치적 중립 및 입후보제한에 관한 연구

2016. 11.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주요 국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및 입후보제한에 관한 연구」 파악을 위하여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5개국 해외연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관 개인의 의견 또는 견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힘.

목 차

□ 국가별 제도개요 ····· 1

□ 공무원 정치적 중립 및 입후보제한에 관한 연구

1. 독일 ····· 6

2. 영국 ····· 13

3. 일본 ····· 28

4. 프랑스 ····· 42

5. 호주 ····· 72

국가별 제도개요

1.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독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됨.

○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특별한 금지나 제한은 없으나, 연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을 것과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가급적 절제와 신중함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연방공무원법 제60조).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연방의회선거법, 연방의회의원법, 연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서 연방의회선거에 후보로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과정에 후보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어 사직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공무원이 연방의회의원 또는 유럽연합의회의원직을 수행하려면 자신의 공무원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공무원법 제40조 및 연방의회의원법 제5조).

2. 영국(United Kingdom)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기본지침은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법 2010」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동 법은 공무규정, 각료규정, 공무운영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 ❍ 정치활동 측면에 있어 공무원은 크게 세 부류(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 기타 공무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활동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함.
- ❍ 정치자금 기부는 공무원의 분류범위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기부액에 제한은 없으나, 공무윤리에 따른 사실상의 제한 효과가 존재함.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 ❍ 모든 공무원들은 「하원결격사유법 1975」에 의해 의회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출마 이전 반드시 사임해야 함.
- ❍ 공무원직을 사임하려는 자는 사임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3. 일본(Japan)

-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관한 관련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이 있음.
- 구체적인 제한 사항으로는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에 열거된 17 항목임.
-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은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이며, 공무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됨.
- 공무원의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 제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공무원 중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겸직할 수 없음.

4. 프랑스(French Republic)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됨.
- ❍ 프레페(Préfet, 경찰청장)과 사법관의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
- ❍ 정치자금 기부에 관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함.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유보의무)은 내용이 아닌 표현 방식을 상황과 직위,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정법원이 유권해석을 함.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 ❍ 공무원 입후보제한은 선거별로 규정함. 퇴직공무원은 관련법규 적용 대상이 아님.
- ❍ 입후보 공무원의 사직은 관례에 따르며 공식선거기간 이전에 함.
- ❍ 입후보 공무원은 대통령선거, 상・하원 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 입후보 시 20일간, 지방・도・기초단체 선거 입후보 시 10일간 연중휴가·근무시간 변경·보직 대기를 신청할 수 있음.

5. 호주(Australia)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호주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
- 호주공무원 가치(Australia Public Service Values)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공무원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치우지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가 별도로 있음.
-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견을 다수에게 드러내는 창구가 많이 생겼는데 공무원은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 당해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후보자 지명을 받는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공무원에서 사직해야하며,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음.

독 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 관계법규

○ 기본법

○ 연방공무원법

○ 연방의회의원법

나. 공무원 정치활동

1) 정당의 당원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당원가입금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2) 정치활동(선거운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 의 범위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3) 공무원의 정치활동(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포함)

가) 허용되는 행위

○ 전통적으로 볼 때 독일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왔음.

○ 독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됨.

나) 제한·금지되는 행위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당원가입금지, 후원금 납부, 선거운동 참여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특별한 금지나 제한은 없으나, 연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을 것과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가급적 절제와 신중함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연방공무원법 제60조).

「연방공무원법」 제60조 기본의무 (1) 공무원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정당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직무수행 시에 대중의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전체적인 행동을 통해 기본법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지하고 그 유지를 보장해야만 한다. (2) 공무원은 자신의 일반 대중들에 대한 직책 및 직무상 의무들을 고려하여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가급적 절제와 신중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 60 Grundpflichten (1) Beamtinnen und Beamte dienen dem ganzen Volk, nicht einer Partei. Sie haben ihre Aufgaben unparteiisch und gerecht zu erfüllen und bei ihrer Amtsführung auf das Wohl der Allgemeinheit Bedacht zu nehmen. Beamtinnen und Beamte müssen sich durch ihr gesamtes Verhalten zu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im Sinne des

Grundgesetzes bekennen und für deren Erhaltung eintreten. (2) Beamtinnen und Beamte haben bei politischer Betätigung diejenige Mäßigung und Zurückhaltung zu wahren, die sich aus ihrer Stellung gegenüber der Allgemeinheit und aus der Rücksicht auf die Pflichten ihres Amtes ergeben.

4)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가의 입장, 관련이슈, 중요판례 등

❍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치활동에 있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비롯하여,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절제'와 '신중'을 유지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해 판례와 학설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판례

- 공무원이 공무원 복장을 착용한 채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연방헌법재판소 판례).[1)]
- 수업 중에 교사가 특정 정당 또는 기타 정치적 내용을 담은 기념배지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연방행정법원 판례)[2)]
- 독일 공무원의 직무 외적인 상황에서의 정치적 활동의 절제 의무는 외국에서의 활동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함(연방행정법원 판례).[3)]

1) BVerfG, NJW 1981, 2112.

2) BVerwGE 84, 292.

3) BVerwGE 21, 50.

- 군인이 반전평화운동에 찬성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연방행정법원 판례).[4)]
- 정치 관련 수업 중에 교사가 중립의무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만하임 행정법원)[5)]
- 공무원 중 군인의 정치적 활동은 자유시간에 영내에 국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학설).[6)]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가. 관계 규정

❍ 독일 기본법(제137조)

❍ 연방공무원법(제40조)

❍ 연방의회의원법(제3조, 제5조 및 제6조)

나. 입후보제한 공무원 및 사직기한

❍ 독일 기본법에서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기본법 제137조제1항).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연방의회선거법, 연방의회의원법, 연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서 연방의회선거에 후보로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과정에 후보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어 사직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4) BVerwG, NJW 1985, 160.

5) VGH Mannheim, VBLBW 1993, 386.

6) Ulrich Battis, Bundesbeamtengesetz, 3., Aufl., 2004, S. 537

○ 다만 공무원이 연방의회의원 또는 유럽연합의회의원직을 수행하려면 자신의 공무원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공무원법 제40조).

○ 연방의회의원법에서도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연방의회의원법 제5조).

○ 연방공무원법에서는 선거 출마를 사유로 한 휴직이나 퇴직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원직의 임기가 만료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의원직 수행 이전의 공직에 다시 복직할 수 있음(연방의회의원법 제6조).

[참고조문]

「기본법」

제137조 (1) 연방, 주, 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자, 직업군인, 일정 기간의 자원입대군인 및 법관의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Art 137

(1) Die Wählbarkeit von Beamten, Angestellt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Berufssoldaten, freiwilligen Soldaten auf Zeit und Richtern im Bund, in den Ländern und den Gemeinden kann gesetzlich beschränkt werden.

「연방공무원법」

제40조 정치적 직무에의 선출 또는 인수 시의 퇴직

(1) 공무원이 독일 연방의회 또는 유럽연합의회의 의원직을 받아들인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이 정한다. 주의 입법기관에 선출되었으며 공직과 의원직을 함께 하는 것이 법률에 모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의회에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연방의회의원법 제5조부터 제7조, 제8조 2항, 제9조, 제23조 5항, 제36조 1항이 적용된다.

§ 40 Ausscheiden bei Wahlen oder Übernahme politischer Ämter
(1) Beamtinnen und Beamte müssen aus ihrem Amt ausscheiden, wenn sie die Wahl zur oder zum Abgeordne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oder zum Europäischen Parlament annehmen. Das Nähere bestimmt ein Gesetz. Für Beamtinnen und Beamte, die in die gesetzgebende Körperschaft eines Landes gewählt worden sind und deren Amt kraft Gesetzes mit dem Mandat unvereinbar ist, gelten die für in den Deutschen Bundestag gewählte Beamtinnen und Beamte maßgebenden Vorschriften der §§ 5 bis 7, 8 Abs. 2, der §§ 9, 23 Abs. 5 und des § 36 Abs. 1 des Abgeordnetengesetzes entsprechend.

「연방의회의원법」
제5조 공법상 근무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정지
(1)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비롯되는 권리와 의무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일자(연방의회선거법 제42조 2항 1문) 또는 의회의원 승인일자로부터 의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직무상 비밀의 의무 및 보상금과 기증의 수취금지의 예외를 지닌 채 정지된다. 이는 연방의회의원이 그러한 근무관계에 편입되는 경우, 그 임명이 유효한 날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표 또는 복무표에 "퇴직"("a. D.")이라고 기재할 권리를 갖는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경우 요양절차 및 사고보상에 대한 청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의원직 종료 후의 복직
(1) 연방의회 의원직 종료 후에 공무원의 복무관계에서 기인하는 권리와 의무들은 최대 6개월간 정지된다. 공무원은 의원직 종료 후 3개월 안에 신청에 의해 신청 이후 최대 3개월 안에 이전 복무관계에 다시 편입된다. 그에게 부여되는 공직은 이전에 복무했던 직무와 동일한 유형 또는 동일한 직급의 이력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최소한 그와 동일한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이전에 복무했던 공직의 보수를 수령한다.

§ 5 Ruhen der Rechte und Pflichten aus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verhältnis
(1) Die Rechte und Pflichten aus dem Dienstverhältnis eines in den Bundestag gewählten Beamten mit Dienstbezügen ruhen vom Tage der Feststellung des Bundeswahlausschusses (§ 42 Abs. 2 Satz 1 des Bundeswahlgesetzes) oder der Annahme des Mandats für die Dauer der Mitgliedschaft mit Ausnahme der Pflicht zur Amtsverschwiegenheit und des Verbots der Annahme von Belohnungen und Geschenken.

Das gleiche gilt, wenn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in ein solches Dienstverhältnis berufen wird, von dem Tage an, mit dem seine Ernennung wirksam wird. Der Beamte hat das Recht, seine Amts- oder Dienstbezeichnung mit dem Zusatz "außer Dienst" ("a. D.") zu führen. Bei unfallverletzten Beamten bleiben die Ansprüche auf das Heilverfahren und einen Unfallausgleich unberührt.

§ 6 Wiederverwendung nach Beendigung des Mandats
(1) Nach der Beendigung der Mitgliedschaft im Bundestag ruhen die in dem Dienstverhältnis eines Beamten begründeten Rechte und Pflichten für längstens weitere sechs Monate. Der Beamte ist auf seinen Antrag, der binnen drei Monaten seit der Beendigung der Mitgliedschaft zu stellen ist, spätestens drei Monate nach Antragstellung wieder in das frühere Dienstverhältnis zurückzuführen. Das ihm zu übertragende Amt muß derselben oder einer gleichwertigen Laufbahn angehören wie das zuletzt bekleidete Amt und mit mindestens demselben Endgrundgehalt ausgestattet sein. Vom Tage der Antragstellung an erhält er die Dienstbezüge des zuletzt bekleideten Amtes.

○ 선출직공무원 또는 연방의회의원의 경우 직무사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이른바 연방의회의원법(Abgeordnetengesetz)에서는 연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준비를 위해 선거 2달 전부터 최대 2달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의회의원법 제3조).

[참고조문]
「연방의회의원법」
제3조 선거준비휴가
연방의회의원인 후보자에게는 선거준비를 위해 선거일 2달 전부터 신청에 의해 최대 2개월의 기간 동안 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자신의 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3 Wahlvorbereitungsurlaub
Einem Bewerber um einen Sitz im Bundestag ist zur Vorbereitung seiner Wahl innerhalb der letzten zwei Monate vor dem Wahltag auf Antrag Urlaub von bis zu zwei Monaten zu gewähren. Ein Anspruch auf Fortzahlung seiner Bezüge besteht für die Dauer der Beurlaubung nicht.

영 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 관계법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기본지침은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법(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을 중심으로 구성됨.

- 동 법은 공무규정, 각료규정, 공무운영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PPERA 2000)」은 선거기간 행정 각료 및 공공기관의 출판행위 및 외부활동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 국민투표법(European Union Referendum Act 2015)」 등 각 선거 진행을 위해 제정된 개별법 또한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둠.

○「지방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 직급(politically restricted posts)을 규정함.

○ 이밖에 암스트롱 메모(The Amstrong Memorandum: 1985년 제정, 1996년 개정)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활용됨.

○ 행정 각 부처는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별 가이드라인(departmental guidance)을 둠.

나. 공무원 정치활동[7]

1) 공무원의 범위

- 정치활동 측면에 있어 공무원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활동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함.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politically free) 공무원 : 현업 및 비사무직 직급(industrial and non-office grades)
- 정치적으로 제한된(politically restricted)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member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고위공무원단 차하위 수준의 공무원(Grades 6 and 7), 속진임용제도(Fast Stream Development Programme)[8] 소속 공무원
- 상기 두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과거직급명칭		현재명칭
고위공무원단	Cabinet Secretary & Head of the Civil Service		
	Permanent Secretary (Civil Service Head of each department)		
	Deputy Secretary	Grade 2	Direct General
	Under Secretary	Grade 3	Director
	Assistant Secretary	Grade 5	Director or Assistant Director
고위공무원단 차하위 그룹	senior Principal	Grade 6	Deputy Director, Assistant Director
	Principal	Grade 7	Team Leader, Policy Manager etc.

<표 1> 주요 공무원 범위 및 직급[9]

7) Cabinet Office,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5*, pp. 14-5.

8) 속진임용제도: 고위관료 채용제도. 정부 내부를 포함, 대학 학업성적이 상위인 자를 대상으로 내각실이 주관하는 공개경쟁시험. 최순영 (2015)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5-14, 한국행정연구원, p. 156.

9) http://www.civilservant.org.uk/information-grades_and_roles.html (검색일: 2016.10.21.)

2) 정치활동(당원가입 및 선거운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10]

- 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한 채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부지(official premises) 내에서의 정치활동 또한 금지됨. 아울러 공무자격으로 외부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정당관련 기관의 후원 아래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
- 현업 및 비사무직 직급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공적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국·지역 단위의 정치활동이 가능함. 다만 정치적 의견을 절제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영국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입후보 지명 승낙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 전국단위 정치활동 : △영국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등에 대한 입후보 사실 공표 △영국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등에서 정당기관을 대표해 재직하는 행위 △국가적 정치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연설하는 행위 △언론, 서적, 기고문,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행위 △영국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선거 등에서 입후보자 혹은 정당을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역단위 정치활동 : △지방자치단체 입후보 △지역단위 정당 기관에서 재직 △지역단위 정치 사안에 대한 공공 연설 △언론, 서적, 기고문,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표출 △지자체 또는 지역 단위 정치 기관 입후보자를 대신한 선거운동

10) http://www.gov.scot/Resource/Doc/76007/0061077.pdf (검색일: 2016.10.22.);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April 2015).

❍ 고위공무원단을 포함,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들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지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각 부처가 제시한 조건(departmental guidance)을 준수해야 함. 다만 정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

❍ 상기 두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의 허가 하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외부기관에 파견근무중인 공무원들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됨. 각 부처는 외부기관에 근무 중인 자들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함.[11]

3) 공무원의 정치활동(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있어 '퍼다(purdah)'는 핵심개념 가운데 하나임. 퍼다는 공무원 사회에서 주로 회자되는 표현으로 의회 해산 이후 총선 또는 국민투표 등 선거 전까지의 기간(pre-election period; period of sensitivity)을 의미함 (「PPERA 2000」은 국민투표의 경우 28일간의 퍼다 기간을 둘 것을 명시). 퍼다는 파키스탄 또는 이란어의 베일(veil) 또는 커튼을 가리키는 용어로, 선거 전 기간 중립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공중(公衆)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꺼리는 양상을 우회적으로 표현[12]

❍ 퍼다 기간 요구되는 덕목은 기본적으로 공무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11) Cabinet Office,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5, p. 14.

12) http://www.civilservant.org.uk/the_westminster_model-elections.html (검색일: 2016.10.21.)

4가지 핵심가치('다. 국가의 입장' 부분 참조)의 연장이며, 그 중에서도 선거 전 기간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impartiality)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 또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됨. 장관 역시 공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각료규정에 따라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자원 사용이 금지됨.

❍ 선거 전 기간의 행위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무원들은 해당 부처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에 문의해야 하며, 관계 사무차관은 해당 사안을 내각처의 공직윤리팀(Propriety and Ethics Team) 또는 내각장관(Cabinet Secretary)에 문의할 수 있음.

○ 2015년 총선 기준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지침은 아래와 같음.[13)]

- 허용되는 행위 : △일상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 사안과 연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가능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도 장관의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보 및 정책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 △필수 업무는 반드시 지속돼야 함. 다만 각 부처 장관들은 지속적·장기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EU 및 국제사업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총선 기간에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함. 유럽의회소속 영국의원들의 질의 사안에는 국익 차원에서 초당파적 관점을 견지해 답변
- 제한·금지되는 행위 : △정부 각 부처 및 소속 직원들은 특정 정당 혹은 정당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당파성을

13) Cabinet Office,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5.

내포하는 선거 이슈에 관여해서도 안 됨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에 관한 질의, 또는 정당 간 공약 비교 질의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 △선거운동에 활용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정책비용 등을 기안·산출할 수 없음 △특정 선거구로부터 긴급한 답변을 요하는 질의를 수령한 이후 의회가 해산된 경우, 해당 선거구 입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답변의 공정성을 기해야 함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 임명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한돼야 함. 특정 공무원의 임기가 의회 해산 및 선거일 사이에 끝나는 경우 새로운 정부 구성 이후 부임하는 장관이 해당 공무원을 재임명 또는 교체하는 시기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있음. 긴급한 임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관이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 야당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 부처는 내각처의 공직임용센터(Centre for Public Appointments)와 협의를 거쳐야 함 △언론의 질의에 대응하는 경우 기(旣)출간된 자료를 참조해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함. 출간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요청사안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처리 △장관은 선거기간 공식발표 행위 전 공직윤리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정부 게시물 관련, 소셜미디어 또는 블로그에 사실에 기반한 필수정보(예. 교통정체 등)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부정책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제한됨. 아울러 선거기간 장관의 약력 및 업무범위를 변경·조정해 게시하는 행위 역시 제한

○ 기타 제한[14)]

- 각 부처는 공중보건 보호 등과 같은 필수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새로운 협의(consultations)를 구성할 수 없음. 의회 해산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협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는 관련 협의 과정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됨.
- 총리관저(Number 10)의 온라인 청원(e-petitions) 웹사이트는 선거기관 새로운 청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청원의 경우에도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없음.
- 정부 기관은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될 수 없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최종 결정권은 해당 기관을 법적으로 소유한 자에 있으며,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정당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금으로 운용되는 정부산하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 및 관련 공공영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정치활동이 제한됨.
- 로비스트와의 접촉 : 로비스트의 범위는 정부 외 그룹에 소속된 사업가, 노동조합원, 언론인 또는 사회활동가 등을 포괄. 영국 정부는 로비스트의 존재를 현대 민주사회를 이루는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인식하므로 공무원과 로비스트 간 만남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음. 다만 양자 간 접촉 과정은 반드시 공직윤리를 준수한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주요 제한 사안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은 로비스트와의 만남에 있어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로비스트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도 안 됨 △공무 중 획득한 정보는 비록 소문일지라도 누군가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14) Cabinet Office,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5.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설해서는 안 됨 △로비스트로부터의 접대 기준은 부처별로 상이하며, 접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속상관에 문의해야 함.[15]

4)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16]

- 정치자금 기부는 공무원의 분류범위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기부액에 제한은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하위직급이거나 급료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 혹은 후보자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외부 집회 참석 등 상기 언급한 부류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되나, 정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해당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됨.
- 다만 정치자금 기부한도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의 기부는 해당 정당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의 주목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이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소속의 장관을 보좌하는 능력과 관련해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음.
- 따라서 특히 고위공무원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당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수준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1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772/Guidance-for-civil-servants.pdf (검색일: 2016.10.17.)

16) Martin Stanley와의 인터뷰 (2016.10.27.): 고위공무원단 출신의 Martin Stanley는 영국 우정사업위원회(Postal Services Commission),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등 공공부문에서 Chief Executive를 역임했으며, How to be a civil servant (2016)의 저자이다.

다. 국가의 입장 및 관련이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영국 정부의 주요 원칙 및 입장은 아래 관계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암스트롱 메모(The Amstrong Memorandum) : 장관에 대한 공무원의 임무 및 책임 범위를 설정 △각 부처 장관은 의회에 대해 업무를 보고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부처 공무원의 행동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공무(公務)는 각종 준칙 및 규율에 의해 규제받는 비정치적·전문적 경력 △공무원들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해당 부처 장관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관의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조언을 제공해야 함. 장관의 정책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지연시키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함. 정치적·개인적·금전적 동기 등으로 인한 인가되지 않은 정보유출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뢰 상실 및 해고 사유를 구성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의회 특별위원회(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 언론사 혹은 개인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부처를 대표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장관에 있음.
- 공무규정(Civil Service Code) :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법 2010」(Part 1)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진실성(integrity), 정직성(honesty), 객관성(objectivity), 중립성(impartiality)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간하는 총선 및 국민투표 선거 전 기간 공무원 행동지침의 기본이 됨. 공무규정은 상기 4가지 핵심가치 외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impartiality)을 별도로 명기하여, 개인의 정치적 관점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이와 관련, 공무원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무상 제공하는 어떤 행위에도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투영해서는 안 됨. 한편 행정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규정의 내용 및 가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속 공무원 본인이 숙지하고 있는 공무규정의 내용과 자신이 전달받은 업무 행위가 상충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부처는 해당 공무원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공무운영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CSMC) : 공무규정을 포괄하는 상위규정. 공무원 행동수칙 및 규율을 포함, 급여·휴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룸. 2015년판 CSMC 제4장은 정치적 중립 및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재직 중 정부 내 업무경험을 담은 개인 회고록 출간 또는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은퇴 후에도 관계 부처의 장 및 국내직 공무원(Home Civil Service)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구해야 함 △공무원은 익명으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여론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는 안 됨 △공무원 노조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노조 대표자로서의 의견임을 명확히 해야 함 △공무운영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행정 각 부처는 장관 혹은 고위공무원단의 개인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혹은 국방사안 등을 다루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이익단체·공공단체·지방정부 및 외부단체 등을 상대하는 경우, 외국 정부를 상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 등을 '민감직'으로 설정해 구분·관리함.

- 각료규정(Ministerial Code) : 영국 정부가 각료들에 요구하는 7대 기본 원칙으로는 자기희생(selflessness), 진실성(integrity), 객관성(objectivity), 책임감(accountability), 투명성(openness), 정직성(honesty), 지도력(leadership) 등이 있음.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장관은 △공직 수행을 위해 정부 비용으로 제공받은 각종 시설을 정당 혹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소속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 집단 간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재정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있어 공적 임무와 사적 이익(가족·친지 등 포함)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무차관 및 독립 고문 등을 통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음. 각료 및 공무원의 차이에 관해서는 <표 2> 참조.

각료/장관(ministers)	공무원(civil servants)
선출직 정치인 (대부분)	지명직 공무원
정당 구성원	정치적 중립
임시직	영구직
공인	익명성
부처 운영	부처 내 근무
정책형성	정책조언
의회에 대한 책임	장관에 대한 책임

<표 2> 각료와 공무원의 주요 역할 비교[17)]

○ 2016 EU 국민투표의 경우[18)]

- 총리 관저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공무원 행위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
- EU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정부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총선 기간의 '퍼다'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정치적 제한이 가해짐.
- 공무원들은 외부행사를 통해 국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없으며, 선거 진영에 가담하거나 해당 진영을 위해 일할 수 없음.
- 개별 장관들은 EU 국민투표에 있어 정부 공식입장과 다른 의견을 견지할 수 있음.
- 공무원들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에 기반한 형태가 되도록 각별히 유의
- 특별고문단(Special Advisers)의 경우 정부 공식입장을 지지하는 외부 선거진영과 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진영을 위해 전임으로 일하려는 자는 퍼다 기간 특별고문직을 사임해야 하며, 비상근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시간에 비례해 특별고문으로서의 봉급을 삭감함. 특별고문으로 있는 자는 공무원들에게 공무규정에 어긋나는 요청을 할 수 없음.

○ 기타 관련이슈[19)]

- 영국 하원 행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당시 스코틀랜드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함.

---

17) http://www.slideshare.net/PhilosophicalInvestigations/ministers-and-civil-servants-independent-study (검색일: 2016.10.25.)

18) Cabinet Office, EU Referendum – guidance for the civil service and special advisers (23 February 2016).

19)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5/mar/23/civil-servants-accused-bias-scotlands-independence-referendum (검색일: 2016.10.26.)

- 보고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당시 대표인 살몬드(Alex Salmond)가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보고서는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의 주장을 담은 백서가 정부 명의로 발간된 사실에 있다며, 공금이 특정 정당 홍보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에 대해 백서 출간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선거결과 집권한 정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반박함. 또 SNP가 스코틀랜드 독립을 표방하고 국민투표를 추구해 온 정당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바, 해당 정책을 토대로 집권에 성공한 정부 정책에 공금이 사용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함.
- 공무원들은 집권 정당에 따른 정부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헌신을 통해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과열된 정쟁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이슈는 쉽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정당들에 의해 '정치화(politicization)' 되는 사안은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대(對)정부 헌신 정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20]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가. 관계규정

○ 「공무운영규정」은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20) James Mitchell, How can you serve a government of one party only to serve another the day after an election? (23 July 2014) : https://www.holyrood.com/articles/opinion/civil-servants-puzzle (검색일: 2016.10.26.)

○ 「하원결격사유법(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제1조는 공무원이 의회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을 명시

○ 「유럽의회선거법(European Parliamentary Act 1978)」은 공무원이 유럽의회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을 규정함.[21)]

나. 입후보제한 공무원 및 사직기한[22)]

○ 모든 공무원들은 「하원결격사유법 1975」에 의해 의회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출마 이전 반드시 사임해야 함.

○ 공무원직을 사임하려는 자는 사임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범주에 속한 공무원들은 입후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무원직을 사임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의회선거 규정에 따라 후보직을 수락하기 이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 각 부처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범주에 속한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낙선했을 경우 반드시 복귀시켜야 함 (낙선자가 선거 결과 발효 후 일주일 이내 재채용을 요청한 경우).
- '정치적으로 제한된' 범주에 속한 공무원들이 낙선하는 경우 각 부처는 해당 공무원들의 재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지님 (낙선자가 선거결과 발효 후 일주일 이내 복직을 요청한 경우). 영국 정부는 해당 업무의 민감성으로 인해 재채용이 불가한 경우 또는 해당 직위가

21) EU 관련 입법의 경우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이후 공식 탈퇴 수순에 의해 폐기될 전망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탈퇴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리스본조약 제50조를 2017년 3월말까지 발동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여왕연설에서 「법안대폐지법(Great Repeal Bill)」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BBC, Brexit: Theresa May to trigger Article 50 by end of March (2 October 2016); http://www.bbc.co.uk/news/uk-politics-37532364 (검색일: 2016.10.25.)

22) Cabinet Office,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5, pp. 14-5;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April 2015).

타인에 의해 이미 승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선자의 복직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장려함.

일 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 관계 법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은 주로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의 제 102조 및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에 의거함.

-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의 제 102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임.
-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은 정치적 행위가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목적 및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상세히 기술한 법령임.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제 102조

(政治的行爲の制限)

第百二條 職員は、政党又は政治的目的のために、寄附金その他の利益を求め、若しくは受領し、又は何らの方法を以てするを問わず、これらの行爲に關与し、あるいは選擧權の行使を除く外、人事院規則で定める政治的行爲をしてはならない。

2 職員は、公選による公職の候補者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3 職員は、政党その他の政治的団体の役員、政治的顧問、その他これらと同様な役割をもつ構成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정치적 행위의 제한)

제 102조 직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등의 이익을 구하거나 수령,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행위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 「인사원규칙」에서 지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함.

2 직원은 공선에 의한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음.

3 직원은 정당 등의 정치적단체의 임원, 정치적 고문, 기타 이와 같은 역할을 가진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나. 공무원의 정치활동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에 의거함.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제 36조가 적용됨.

1) 정당의 당원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 항목 중 정당 당원가입에 관한 항목은 없음.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이 적용되는 범위는 이하와 같음.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제 102조

(適用の範囲)

1 法及び規則中政治的行爲の禁止又は制限に關する規定は、臨時的任用として勤務する者、條件付任用期間の者、休暇、休職又は停職中の者及びその他理由のいかんを問わず一時的に勤務しない者をも含むすべての一般職に屬する職員に適用する。ただし、顧問、參与、委員その他人事院の指定するこれらと同様な諮問的な非常勤の職員（法第八十一條の五第一項に規定する短時間勤務の官職を占める職員を除く。）が他の法令に規定する禁止又は制限に触れることなしにする行爲には適用しない。

2 法又は規則によつて禁止又は制限される職員の政治的行爲は、すべて、職員が、公然又は内密に、職員以外の者と共同して行う場合においても、禁止又は制限される。

3 法又は規則によつて職員が自ら行うことを禁止又は制限される政治的行爲は、すべて、職員が自ら選んだ又は自己の管理に屬する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者を通じて間接に行う場合においても、禁止又は制限される。

4 法又は規則によつて禁止又は制限される職員の政治的行爲は、第六項第十六号に定めるものを除いては、職員が勤務時間外において行う場合においても、適用される。

(적용의 범위)

1 법 혹은 규칙중 정치적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시적 임용으로 근무하는 자, 조건부 임용기간의 자, 휴가, 휴직 또는 정직 중인 자, 그 외의 이유를 불문하고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직원에 적용됨. **2** 법 및 규칙에 의해 금지, 제한되는 직원의 정치적 행위는 모두 직원이 공연히 또는 내밀하게 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금지, 제한됨. **3** 법 및 규칙에 의해 직원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는 모두 직원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신의 관리하에 속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금지, 제한됨. **4** 법 및 규칙에 의해 금지, 제한되는 직원의 정치적 행위는 제 6항 제 106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실제로 공무원 중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소속된 경우는 많음.
- 공무원의 정당의 가입하여 일반 당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정당의 임원이 될 수는 없음(「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 제 6항 제 5호). 이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함(「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제 36조 제 1항).
- 상기 조항은 정당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치단체의 결성에도 관여할 수 없음이 명기되어있음.

2) 정치활동(선거운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 1)과 같음.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특정 공무원 중 일부는 제외됨.

- 해당 특정 공무원은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과 같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동시에 소속된 자를 의미함.

3) 공무원의 정치활동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 제 6조에 17항목이 기재되어있음.

가) 허용되는 행위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 제 6조의 17 항목은 금지항목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금지 항목 이외에 항목은 허용됨.

나) 제한, 금지되는 행위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 은 제 5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8가지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제 6조는 금지 및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로서 17가지 항목을 명시하였음.

- "정치적 목적"의 정의는 이하와 같음.

① 규칙 14-5에 의거한 공직선거[23]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민심사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③ 특정 정당 및 그 외의 정치적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④ 특정 내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⑤ 정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

23)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수장,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해구조업조정위원회의 위원

⑥ 국가의 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서 결정한 정책 (법령, 규칙 및 조례를 포함)의 실시를 방해하는 것.

⑦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사무감사의 청구에 관한 서명을 성립시키거나 하거나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

⑧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해산 및 법률에 의거한 공무원의 해직청구에 관한 서명을 성립, 무산시키고자 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청구에 의거한 해산, 해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

- "정치적 행위"의 정의는 이하와 같음.

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직위명, 직권, 그 외 공사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②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부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기타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않음에 대한 대상 또는 보복으로써, 임용, 직무, 급여 기타 직원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으려 꾀하거나 또는 얻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주려고 도모하거나 또는 주려고 선동하는 것

③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부과금, 기부금, 회비 또는 그 외의 금품을 요구, 수령하거나 방법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④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전 호에서 규정한 금품을 국가공

무원에게 증여, 지불하는 행위.

⑤ 정당 및 기타 정치적 단체의 결성을 기획하여 결성에 참여, 원조하는 행위 및 이와같은 단체의 임원, 정치적 고문, 기타 유사한 역할을 가진 구성원이 되는 행위.

⑥ 특정 정당 및 기타 정치적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혹은 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

⑦ 정당 및 기타 정치적 단체의 기관지, 그 외의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를 원조하는 행위.

⑧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 5항 제 1호에 규정된 선거, 동 항 제 2호에 규정된 국민심사의 투표, 동 항 제 8조에 규정된 해산, 해직 투표에 있어서 투표하게끔 또는 하지 않게끔 권유하는 행위.

⑨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 지도하거나 그 외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⑩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행진, 기타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도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⑪ 집회, 기타 다수의 사람과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확성기, 라디오,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공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⑫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 도화를 구가 및 행정집행법인의 청사,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시키는 행위, 그 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및 행정집행법인의 청사, 시설, 자재,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시키는 행위.

⑬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서명, 무서명의 문서, 도화, 음반, 형상을 발생하여 회람, 게시, 배부, 다수의 사람을 향하여 낭독, 청취시키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제작, 편집하는 행위.

⑭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연극을 연출, 주재하거나 이를 원조하는 행위.

⑮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상의 주의주장, 정당 및 그 외 정치단체의 표시에 이용되는 깃발, 완장, 기장, 금장, 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⑯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근무시간 중 전 호에 명시한 것을 착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⑰ 명의 및 형식을 불문하고, 이상의 각 호에 명시된 금지, 제한사항을 일탈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은 제 136조에 명시되어있음.

- 일반적으로 내각에 소속되어있는 국회의원은 "특정공무원"이라 불리며 선거운동이 허용되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특정 공무원은 이하와 같음.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제 136조

(特定公務員の選擧運動の禁止)

第百三十六條 次に掲げる者は、在職中、選擧運動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一　中央選擧管理會の委員及び中央選擧管理會の庶務に從事する總務省の職員、參議院合同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の職員並びに選擧管理委員會の委員及び職員

二 裁判官

三 檢察官

四 會計檢査官

五 公安委員會の委員

六 警察官

七 收稅官吏及び徵稅の吏員

(특정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제 136조 이하의 자는 재직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회의 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외의 서무에 종사하는 총무성의 직원, 참의원 합동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2 재판관
3 검찰관
4 회계검사관
5 공안위원회의 위원
6 경찰관
7 수세관이 (官吏) 및 징세이인 (吏員)

- 일반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은 제 136조의 2에 명시되어있음.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제 89조

(公務員等の地位利用による選擧運動の禁止)
第百三十六條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その地位を利用して選擧運動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國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員又は行政執行法人若しくは特定地方獨立行政法人の役員若しくは職員
二 沖縄振興開發金融公庫の役員又は職員（以下「公庫の役職員」という。）
2　前項各号に掲げる者が公職の候補者若しくは公職の候補者となろうとする者（公職にある者を含む。）を推薦し、支持し、若しくはこれに反對する目的をもつてする次の各号に掲げる行爲又は公職の候補者若しくは公職の候補者となろうとする者（公職にある者を含む。）である同項各号に掲げる者が公職の候補者として推薦され、若しくは支持される目的をもつてする次の各号に掲げる行爲は、同項に規定する禁止行爲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一 その地位を利用して、公職の候補者の推薦に關与し、若しくは關与することを援助し、又は他人をしてこれらの行爲をさせること。
二 その地位を利用して、投票の周旋勸誘、演說會の開催その他の選擧運動の企畫に關与し、そ

の企畫の實施について指示し、若しくは指導し、又は他人をしてこれらの行爲をさせること。
三 その地位を利用して、第百九十九條の五第一項に規定する後援団体を結成し、その結成の準備に關与し、同項に規定する後援団体の構成員となることを勸誘し、若しくはこれらの行爲を援助し、又は他人をしてこれらの行爲をさせること。
四 その地位を利用して、新聞その他の刊行物を發行し、文書図畫を掲示し、若しくは頒布し、若しくはこれらの行爲を援助し、又は他人をしてこれらの行爲をさせること。
五 公職の候補者又は公職の候補者となろうとする者（公職にある者を含む。）を推薦し、支持し、若しくはこれに反對することを申しいで、又は約束した者に對し、その代償として、その職務の執行に当たり、当該申しいで、又は約束した者に係る利益を供与し、又は供与することを約束すること。

(공무원 등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 136조의 2 이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행정집행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
2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공고의 임원 및 직원 (이하, 공고의 임직원)
나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 및 지지하거나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하의 행위, 공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공직의 후보자로서 추천되거나 지지되는 목적을 가진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 후보자의 추천에 관여 혹은 관여를 원조하거나 타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것
2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의 주선 권유, 연설회의 개최 또는 기타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여 그 기획의 실시에 대하여 지시, 지도하거나 타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것
3 그 지위를 지용하여 제 199조의 5의 제 1항에 규정된 후원단체를 결성, 결성의 준비에 관여, 구성원이 될 것을 권유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타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것
4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문 및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여 문서 도화를 게시, 배포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타인에게 시키는 것
5 공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의뢰하거나 약속을 한 자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는 것

4)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 14-7 (정치적 행위)」에 명시된 금지사항 중 공무원이 개인신분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제 22조의 9에 의해 기부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됨.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제 22조 **(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又は政治資金パーティーの對価の支拂への公務員の關与等の制限)** **第二十二條の九** 國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員又は行政執行法人若しくは特定地方獨立行政法人の職員で次に掲げるものは、その地位を利用して、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を求め、若しくは受け、若しくは自己以外の者がする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に關与し、又は政治資金パーティーに對価を支拂つて參加することを求め、若しくは政治資金パーティーの對価の支拂を受け、若しくは自己以外の者がするこれらの行爲に關与してはならない。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 파티의 대가 지불에 대한 공무원 관여 등의 제한)** **제22조의 9**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및 행정집행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직원 중 이하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기부를 구하거나 이를 수락, 자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에 관여, 정치자금 파티에 대가를 지불하여 참가하는 것을 구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또는 자기 이외의 자가 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됨.

-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해서는 개인의 기부와 동일하게 취급됨.
  - ・정치자금 기부에 총액에 관한 제한은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제 22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엔임.
-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제

21조에 의하여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 및 정당자금단체, 정치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함.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제 21조 **第二十一條** 會社、勞働組合、職員団体（國家公務員法第百八條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第五十二條に規定する職員団体をいう。）その他の団体は、政党及び政治資金団体以外の者に對しては、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をしてはならない。 **제 21조** 회사, 노동조합, 직원단체 (국가공무원법 제 108조의 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52조의에 규정된 직원단체), 그 외의 단체는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자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가의 입장, 관련이슈, 중요 판례등

1) 사루후츠 사건 (猿拂事件)[24]

❍ 1967년, 홋카이도 (北海道) 사루후츠무라 (猿拂村)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정사무관[25]이 제 31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앞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포스터 6매를 공영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 약 184매의 게시를 의뢰한 사건.

- 본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인사원규칙 (人事院規則)」이 「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에 위배되는지가 논점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음[26].

24) 정식 사건명: 사루후츠 (猿拂) 사건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 사건) 사건 번호: 쇼와(昭和) 44（あ）1501

25) 현재는 우정공사의 민영화로 인해 우정공사 관련 직책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벗어남. 우정민영화법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중의원 제163회국회 제정법률 일람. URL: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6320051021102.htm (접속일자: 2016년 11월 1일)

26) 최고재판소 판례집. URL: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800 (접속일자: 2016년 10월 29일)

- 본 사건은 헌법학적으로 중요 판례로 다루어짐.

2. 공무원의 입후보제한 및 사직 기한

가. 관계규정

❍ 공무원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의 제 89, 90, 91조에 의거함.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제 89조

(公務員の立候補制限)

第八十九條 國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員又は行政執行法人若しくは特定地方獨立行政法人の役員若しくは職員は、在職中、公職の候補者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公務員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内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内閣官房副長官、内閣總理大臣補佐官、副大臣、大臣政務官及び大臣補佐官

二 技術者、監督者及び行政事務を担当する者以外の者で、政令で指定するもの

三 専務として委員、顧問、參与、囑託員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職にある者で臨時又は非常勤のものにつき、政令で指定するもの

四 消防団長その他の消防団員 (常勤の者を除く。)及び水防団長その他の水防団員 (常勤の者を除く。)

五 地方公營企業等の勞働關係に關する法律第三條第四号に規定する職員で、政令で指定するもの

2 衆議院議員の任期滿了による總選擧又は參議院議員の通常選擧が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衆議院議員又は參議院議員は、前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在職中その選擧における公職の候補者となることができる。地方公共団体の議會の議員又は長の任期滿了による選擧が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当該議員又は長がその選擧における公職の候補者となる場合も、また同様とする。

3 省略

(공무원의 입후보 제한)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행정집행법인, 특정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재직 중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단, 이하의 공무원은 예외로 함.
(一) 내각총리대신, 그 외의 국무대신, 내각관방 부장관, 내강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 대신 정무관 및 대신 보좌관
(二) 기술자, 감독자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 이외에 정령이 지정한 자
(三) 전무로서 위원, 고문, 참여, 위촉원 등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로 임시 혹은 비상근으로서 정령이 지정한 자
(四) 소방단잔 및 그 외의 소방단원 (상근 제외), 수방단장 및 그 외의 수방단장 (상근 제외)
(五) 「지방공영기업등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4호로 규정된 직원중, 정령으로 지정된 자
2 중의원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 통상선거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관계없이 재직 중, 해당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이 가능함.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및 수장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행해지는 경우, 해당 의원 및 수장은 그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음.
3 (생략)

나. 입후보제한 공무원 및 사직기한

❍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공직선거 입후보가 불가능하며, 사직기한은 후보자 등록기간과 동일함.

-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은 국가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해,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대신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 소속된 자는 입후보가 가능함.
-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의 제 90조에 후보자 등록을 공무원직 사퇴로 간주함.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제 90조

(立候補のための公務員の退職)

第九十條　前條の規定により公職の候補者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公務員が、第八十六條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若しくは第八項、第八十六條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九項、第八十六條の三第一項若しくは同條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十六條の二第九項前段又は第八十六條の四第一項、第二項、第五項、第六項若しくは第八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より公職の候補者となつたときは、当該公務員の退職に關する法令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届出の日に当該公務員たることを辭したものとみなす。

(입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퇴직)

제90조 전 조의 규정에 의거한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공무원이 제 86조 제 1항부터 제 3항, 제 8항, 제 86조의 2의 제1항, 제 9항, 제86조의 3의 제 1항, 제 2항에 있어서 준용되는 제 86조의 2의 제 9항전단 및 제 86조의 4의 제 1, 2, 5, 6, 8항의 규정[27]에 따라 공직 후보자에 등록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의 퇴직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관계 없이, 등록일에 해당 공무원을 퇴직한 것으로 간주함.

27) 이상의 규정은 중의원의원 총선거 선거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선거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에 관한 규정임.

프랑스

프랑스 연구관 : 안종웅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 관계법규

- ❍ 국가공직관련 규정 「1984년 1월 11일 n° 84-16 법」[28)]
- ❍ 지방자치단체공직관련 규정 「1984년 1월 26일 n° 84-53법」[29)]
- ❍ 공립병원직 관련 「1986년 1월 9일 n° 86-33법」[30)]
- ❍ 사법관직위 일반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 n° 58-1270 명령법」[31)]
- ❍ 군인직위일반에 관한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32)]
- ❍ 「형법 432-7조, 432-12조, 432-15조」
- ❍ 「선거법 L52-8조, L52-4조, L52-6조」

---

28) 국가공직관련 규정 「1984년 1월 11일 n° 84-16 법」(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 à la fonction publique de l'État)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01099&fastPos=1&fastReqId=338656571&categorieLien=cid&oldAction=rechTexte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29) 지방자치단체공직관련 규정 「1984년 1월 26일 n° 84-53법」(Loi n° 84-53 du 26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20434&fastPos=1&fastReqId=225940823&categorieLien=cid&oldAction=rechTexte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30) 공립병원직 관련 「1986년 1월 9일 n° 86-33법」(Loi n° 86-33 du 9 janvier 1986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12459&fastPos=1&fastReqId=1454788969&categorieLien=cid&oldAction=rechTexte#LEGISCTA000006125417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31) 사법관직위 관련 조직법을 담은 「1958년 12월 22일 n° 58-1270 명령법」(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39259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32) 군인직위일반에 관한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LOI n° 2005-270 du 24 mars 2005 portant statut général des militair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808186&categorieLien=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국방법 L4121-3조」

○「선거법 LO132조, L195조, L231조」

○「블랑-메닐 기초단체선거에 대한 2009년 5월 15일 최고행정법원의 n° 322304 판결」

○「1950년 3월 3일 최고행정법원의 델 자메 판결」

○「파리지방법원 2011년 12월 15일 n° 9834923017 판결」

○「선거법 L52-8조」「2005년 12월 30일 n°2005-1719 법 5조」

○「1988년 3월 11일 N°88-227 투명정치자금관련법」

○「최고행정법원 1993년 7월 28일 97189호 판결」

○「1956년 6월 18일 최고행정법원 판결」p.213.

나. 공무원 정치활동

1) 정당의 당원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33] 정당가입이 허용됨.

○ 선출직 공직에 출마한 군인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과 선출 후 공직 임기 동안 정당가입 금지가 중지되며, 파견자 신분으로 분류됨 (「국방법 L4121-3조」[34]·「군인직위법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 5조」).

33) 관련 규정 (「국방법 L4121-3조」)
공무원 권리와 의무 관련 규정 「1983년 7월 13일 n°83-634법 6조」「2016년 4월 20일 n°2016-483법」에 따라 개정.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Loi dite loi Le Pors. Article 6, Modifié par LOI n°2016-483 du 20 avril 2016)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04704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34) 「국방법 L4121-3조」, 「2008년 5월 26일 2008-493법 3조」에 따라 개정. (Code de la défense - Article L4121-3, Modifié par LOI n°2008-493 du 26 mai 2008 - art. 3)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1307&idArticle=LEGIARTI000018882506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2) 정치활동(선거운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 허용 공무원 :

- 모든 공무원.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는 인식으로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그리고 선출공직입후보 등의 자율권이 모든 공무원에게 있음(「1946년 헌법 전문 제 1조」·「국가공직관련 1984년 1월 11일 n° 84-16 법」).
- 퇴직공무원일 경우 피선거권 제한 관련 법규의 효력이 상실됨(「선거법 L195조」).

○ 제한 공무원 :

- 군인. 정당가입이 금지(「군인직위법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 5조」)
- 프레페(Préfet.경찰청장). 피선거권에 대한 엄격한 규제(정치적 중립)유보 의무의 엄격한 적용(「선거법 LO132조, L195조, L231조」)
- 사법관. 모든 공직의 겸임 금지. 피선거권의 엄격한 규제. 모든 정치적 의결 금지(「사법관직위 관련 조직법, 1958년 12월 22일 n° 58-1270 명령법 8조,9조,10조」)

3) 공무원의 정치활동

가) 허용되는 행위

○ 기본권에 있어 공무원도 시민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선출직 입후보와 직무수행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됨.

○ 공무원 신분과 정치자금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시간 외 정당 활동이 허용됨.

○ 따라서 업무시간과 정치활동을 구분하고, 입후보시 사직해야 함.

○ 기초단체 공무원은 업무 시간 외에 기초단체 입후보자 정치자금 관리 회계사로 일할 수 있음(「선거법 52-4조, 52-6조」・「블랑-메닐 기초단체선거에 대한 2009년 5월 15일 최고행정법원의 n° 322304 판결」).

나) 제한·금지되는 행위

○ 근무시간 중 공무원이 정당 혹은 선출직 입후보자에게 자발적이든 요청에 의한 것이든, 무상으로 제공하든, 모든 업무 수행은 선거법 위반임(「선거법 L52-8조」).

○ 근무시간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유보(중립)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판결함(「1950년 3월 3일 최고행정법원의 델 자메 판결」).

○ 공무원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은 형법에 따라 처벌됨(「형법 432-7조」).

○ 경찰청장과 고위경찰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됨.

○ 군인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금지됨.

○ 사법관의 공직 겸직 금지와 정치적 의결이 금지됨.

○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불법이득과 공자금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만유로 이하 벌금에 처함(「형법 432-12」[35])

○ 공문서 파손・위조・위장취업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유로 벌금(「형법 432-15」[36]・「파리지방법원 2011년 12월 15일 n° 9834923017 판결」)

35)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719&idArticle=LEGIARTI000006418521&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36)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719&idArticle=LEGIARTI000006418530&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4)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공무원도 일반 유권자처럼 동일선거에 한명 또는 여러 후보자에게 4,600유로 이상 기부[37]를 할 수 없으며, 한 개인의 연간 기부금・당비 총액이[38] 7,500유로를 초과 할 수 없음.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가의 입장, 관련이슈, 중요판례 등

1) 국가의 입장.

○ 공무원의 유보의무[39][40].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중립원칙이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어떤 선전에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견의 구두・서면 표현을 유보하거나 신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함[41].

○ 공무원의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는 형법적용대상이며 국가·개인·기업과 단체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므로 의견표현에 신중할 의무가 있음 (「르 페르법 26조」)[42].

○ 공무원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

37) 정치기부금 관련 규정. 「선거법 L52-8조」「2005년 12월 30일 n°2005-1719 법 5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 Article L52-8, Modifié par Loi n°2005-1719 du 30 décembre 2005 – art. 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127&dateTexte=20100212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38) 「1988년 3월 11일 N°88-227 투명정치자금관련법」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색일: 2016년 7월 9일)

39)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프랑스 총무처 사이트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droits-et-obligations#Obligation_reserve_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40) 유보의무 – 프랑스정부 공공서비스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30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41) 「최고행정법원 1993년 7월 28일 97189호 판결」 (Conseil d'Etat, 10/ 7 SSR, du 28 juillet 1993, 97189, publié au recueil Lebon)

42) 공무원 권리와 의무관련「1983년 7월 13일 n° 83-634법」일명「르 페르법」(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Loi dite loi Le Por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04704&dateTexte=20080116#LEGISCTA000006086311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유보의무는 표현 내용이라 아니라 방식에 대한 의무이며, 상황과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됨.

- ❍ 유보의 의무는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외에게도 적용됨.
- ❍ 유보의무 불이행은 사례별로 공권력이 판결함.
- ❍ 직급·직책에 차등적용. 특히, 판사·군인·경찰·보건위생·환경전문 공무원 등과 고위공직자(대사, 프레페(경찰청장))들에게 더 엄격히 적용됨. 반대로 선출노조공무원은 강도 높은 비판도 허용됨[43].
- ❍ 언론에 의견을 개진할 경우, 파급력과 표현 용어 따라 차등 적용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위 훼손 여부도 심의대상이 됨.
- ❍ 정직 및 대기 공무원도 의무 준수가 요구됨.

2) 관련이슈

- ❍ 사례별 판례 선호 원칙. 공무원들도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유보의무의 준수는 상황과 표현방식 그리고 직급과 직위 등을 고려하여 행정법원의 심의와 판결 사안으로 분류됨[44].
- ❍ 하원의 유보의무 규정 입법안 거부. 아니세 르 포르 장관(1981-1984 공직부장관)은 공무원정관관련 법규 제정 시, 원칙 중 하나는 공무원(의견)유보의무를 경우마다 행정법원의 유권해석 사안으로 분류하며 법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음. 같은 맥락에서 하원도 유보의무 규정법안 입법을 거부함.

43) 「1956년 6월 18일 최고행정법원 판결」 p.213.

44) 르몽드신문, 2008. 1. 31,《공무원, 온전한 권리의 시민》 (Les fonctionnaires, citoyens de plein droit, par Anicet Le Pors)
http://www.lemonde.fr/idees/article/2008/01/31/les-fonctionnaires-citoyens-de-plein-droit-par-anicet-le-pors_1005817_3232.html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 "징계처분의 대상인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보류의무는 공직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대신", "법관・군인・경찰의 관련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장을 열어 놓고 있음"[45].

○ 르 몽드, 2010. 3. 29, 〈마텔리, 표현의 자유 혹은 불복종의 권리〉, 군인과 헌병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마텔리 헌병대장은 군인의 (의사표현) 유보의무는 기본권을 침해라는 주장으로 직위파면됨[46].

○ 르 피가로, 2008. 6. 18, 〈군 영관급 익명단체 스쿠프의 조직원 신원이 파악된 듯...〉, 군 영관급 익명단체인 스쿠프는 2008년 군백서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르피가로 일간지에 기재했고, 특히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이 유린되는 군의 현 정책을 신랄히 비판함. 이에 모랭 국방부장관은 군인도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시민이지만 군의 복종의 의무와 유보의 의무도 있다는 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함[47].

3) 중요 판례

○ 원칙적으로, 이 보류의무가 자유로운 의견·의사를 가질 수 있는 원칙과 민주제도 하에서 이 개념의 당연귀결인 표현의 자유라 불리는 기본시민권리 행사를 공무원에게 금지시키는 근거가 되

45) 하원공보(JOAN) 2001. 10. 8, 〈프랑스하원, 공무원 유보의 의무에 대한 하원의원의 대정부질문과 장관답변〉 http://questions.assemblee-nationale.fr/q11/11-63846QE.htm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46) http://www.lemonde.fr/idees/article/2010/03/29/matelly-liberte-d-expression-ou-droit-a-la-desobeissance-par-jean-yves-fontaine_1325687_3232.html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47) http://www.lefigaro.fr/politique/2008/07/11/01002-20080711ARTFIG00292-des-officiers-de-surcouf-auraient-ete-identifies-.php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어서 안 됨. 또한 이 권리들은 공무원 권리와 의무 관련 법규인 「1983년 7월 13일 n° 83-634법 6조」로 보장하고 있음[48].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가. 관계 규정

○ 「선거법 LO132조」·「국가조직법 3조」 상·하원 의원 입후보제한 관련 규정[49]

○ 「선거법 L195조」지방·도의회 의원 입후보제한 관련 규정[50]

○ 「선거법 L231조」기초단체장 및 위원 입후보제한 관련 규정[51]

나. 입후보제한 공무원 및 사직기한

1) 입후보제한 공무원

가) 상·하원 의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O132조」·「국가조직법 3조」)

○ 최근 3년 동안 선거구가 관할 지역이었거나 근무지였던 경찰청장 (프레페 Préfet)

48) 최고행정법원, 1993. 7. 28, 〈10/7 SSR, 97189호 판결〉 (Conseil d'Etat, 10/ 7 SSR, du 28 juillet 1993, 97189, publié au recueil Lebon).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JuriAdmin.do?idTexte=CETATEXT000007836435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49) 「선거법 LO132」, 「2013년 5월 17일 2013-402 조직법 3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LO132 Modifié par LOI organique n°2013-402 du 17 mai 2013 - art. 3 (V))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310&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50) 「선거법 L195조」, 「2013년 5월 17일 2013-403법 1조와 7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L195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1 (V),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459&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3일)

51) 「선거법 L231조」(Code électoral Article L231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22 (V))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550&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 최근 1년 동안 선거구가 관할 지역이었거나 근무지였던 공무원 : 경찰지청장, 경찰청사무국장, 경찰청장부속실 부서장 ; 지방정무 혹은 코르스(Corse자치단체) 정무 담당 사무국장과 파견자 ; 경찰청 부서장, 경찰청과장과 경찰지청 사무국장 ; 지방·도내 국가시민행정업무 부서장, 부부서장과 과장 ; 공공기관 회계사를 포함한 국가재정기관과 부속기관의 지방·도·시 관할 부서장 ; 교육감, 교육청 장학사와 부장학사, 초등교육기관 감독관 ; 노동감독관 ; 국가기관의 지방행정 부서장과 책임자, 지방프랑스은행 부서장과 소속부서장 ; 행정법원과 상고행정법원의 법원장과 판사 ; 지방상공회의소와 지방 회계원의 기관장과 심의관 ; 상사법원장과 노동쟁의원회 위원장 ; 지역지휘권을 갖은 국립헌병장교와 부사관과 집행부관 ; 국립경찰 지역지휘권을 갖은 국립경찰과 집행부관; 헌병을 제외한 지역지휘권과 행정권을 갖은 군인과 집행부관 ; 회계원의 감사권을 갖은 지방복지기관 부서장 ; 지방보건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과 사무처장 ; 국립보건기관 기관장과 부서장 ; 도단위 화재·구조기관장과 부서장과 요원 ; 지방의회·코르스(Corse)자치단체·도의외·2만 명 이상 주민의 기초단체·2만 명 이상 주민의 기초단체 연합·지역연합·시연합·도시의 국장과 부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부서책임자 ; 지역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 된 공공기관의 국장과 부국장과 부서장 ; 지방의회의장실·크르스(Corse)의회의장실·코르스(Corse)지자체집행부의장실·도의회의장실·주민 2만 명 이상의 시장실·주민 2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연합의장실·지역연합의장실·시연합의장실·대도시장실의 구성원

나) 지방·도의회 의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195조」)

- 최근 3년 동안 해당 도에서 직무했거나 직무 중인 경찰청장 ; 최근 1동안 같은 상황의 경찰지청장·경찰청사무처장·경찰청장부속실 부서장 또는 경찰청장의 미션을 받은 지청장 또한 경찰지청의 선임사무장 ;
-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할지역의 공무원 : 상고검사국과 법원의 법조인 ; 행정법원 구성원 또는 판사와 회계원지청 사무처장 ; 지방법원 판사 ; 관할 지역의 육·해·공군 장교 ; 국립경찰 ; 공공토목공사의 선임감독관, 차석감독관, 감독관 ; 광산 상근업무 감독관 ; 교육감 ; 교육청 장학사와 초등교육 장학사 ; 공공예산 집행과 직·간접 과세와 납세 및 징수를 위한 공무원 신분의 회계사와 직원 및 고용인 ; 우편과 통신기관 도지부장과 주요 감독관 ; 담배제조공장의 선임기술관, 감독관과 담배판매와 문화업무 부서장 ; 산림·상수·도시계획·건설 선임기술관, 차석기술관, 기술관과 기타 직원 ; 측량기구 감독관 ; 사회·보건 활동의 도책임자와 감독관 ; 도의 국가민간행정의 지역책임자와 선임직원 ; 도·지방의회 의장실 구성원, 도·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업무 책임자들 ; 의회와 코르스(Corse)자치단체 의장실 구성원들, 코르스(Corse)지방자치단체와 남코르스와 북코르스 도의 공공

기관의 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분과 책임자

- 경찰청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일 경우, 상기명시 기간은 선거일에 퇴직권리 행사가 허용 된 후보자에게 강요될 수 없음.

다) 기초단체장 및 위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231조」)

- 최근 3년간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 최근 1년간의 경찰지청장, 경찰청사무처장, 경찰청장 부속실 부서장, 경찰청장의 미션을 받은 지청장, 코르스(Corse)지자체 정무 또는 지방 정무 미션을 받은 사무처장은 피선거권이 없음.
- 최근 6개월 간 해당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했거나 직무 중인 다음과 같은 공무원은 기초단체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음 : 상고법원 판사 ; 행정법원과 회계원지방분소 위원 ; 지방지휘관할권 내의 기초단체의 육·해・공군 장교 ; 지방법원의 판사 ; 현역 국립경찰 ; 공무원신분의 기초단체 공금의 회계사와 기초단체에 서비스를 제공 기업주 ; 경찰청 부서장과 부서책임자와 경찰지청의 선임사무장 ;지방의회・도의회・코르스(Corse) 또는 귀이안(Guyane) 또는 마르티니끄(Martinique)지방자치단체・독립재정기초단체협의기관과 관련 공기관에서 국장과 부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과장과 책임자 그리고 집행부 의장과 의회의장과 기관장의 전결권을 위임 받은 부속실의 실장・부실장・

부서장・부부서장・부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지방철도 업무관련자 : 선임기술감독관, 분과기술감독관과 국가토목공사 감독관, 국가토목공사 주요분과 책임자

○ 기초단체 직원은 고용된 기초단체에 피선거권이 없음. 단, 공무원신분과 독립직업군과 집행업무에 따른 기초단체의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민 1,000이하의 기초단체의 비정규직 고용자들은 제외 됨.

○ 상기 명시 된 기간은 선거일에 퇴직권리 행사가 허락 된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없음.

2) 사직기한

가) 공식선거유세 이전 사직을 권고하는

○ 대통령선거, 상・하원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 입후보 공무원[52] : 장관실의 공무원, 정부 정책결정부서 소속 직원, 관공서 기관장, 경찰청 청장급관료(프레페 Prefet).

나) 기타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조치[53] :

○ 대통령선거, 상・하원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 입후보 시 20일간의 연중휴가 혹은 근무시간 변경과 보직 대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지방・도・기초단체 선거 입후보자 공무원은 10일간의 연중휴가 혹은 근무시간 변경과 보직대기를 신청할 수 있음.

52) 선출직 후보 국가공무원을 관련 규정 공문 제 1918호 1998년 2월 10일 (Circulaire no 1918 du 10 février 1998 relative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fonctionnaires et agents civils de l'État candidats à une fonction publique élective) http://www.dgdr.cnrs.fr/BO/1998/06-98/5236-3-bo0698-cir1918.htm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53) 상동

부록 1. 관련법규 번역.

- 상・하원 의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O132」, 「2013년 5월 17일 2013-402 국가조직법 3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LO132 Modifié par LOI organique n°2013-402 du 17 mai 2013 - art. 3 (V))
- 지방・도의회 의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195조」,「2013년 5월 17일 2013-403법 1조와 7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L195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1 (V),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7)
- 기초단체장 및 위원 입후보제한 관련선거법「선거법 L231조」,「2013년 5월 17일 N°2013-403법 22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Article L231,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22 (V))
- 군인직위일반에 관한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LOI n° 2005-270 du 24 mars 2005 portant statut général des militaires)
- 군인정당가입 금지와 선출직공직 출마 관련 규정 (「국방법 L4121-3조」
- 사법관직위 관련 조직법을 담은 「1958년 12월 22일 n° 58-1270 명령법」(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상·하원 의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O132」, 「2013년 5월 17일 2013-402 국가조직법 3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LO132 Modifié par LOI organique n°2013-402 du 17 mai 2013 - art. 3 (V))[54]

- 「선거법 LO132」,
  - 「2013년 5월 17일 2013-402 국가조직법 3조」에 따라 개정

I.- 경찰청장 (프레페 préfet)는 선거일 기준 최근 3년간 관할지역있었거나 관할지역인 프랑스 내 모든 또는 일부 선거구에서 피선거권이 없다.

II. -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 되는 전체 또는 일부 선거구에서 아래와 같은 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경찰지청장, 경찰청사무국장, 경찰청장부속실 부서장 ;
2.지방정무 혹은 코르스(Corse자치단체) 정무 담당 사무국장과 파견자 ;
3.경찰청 부서장, 경찰청과장과 경찰지청 사무국장 ;
4.지방·도내 국가시민행정업무 부서장, 부부서장과 과장 ;
5.공공기관 회계사를 포함한 국가재정기관과 부속기관의 지방·도·시 관할 부서장 ;
6.교육감, 교육청 장학사와 부장학사, 초등교육기관 감독관 ;
7.노동감독관 ;
8.국가기관의 지방행정 부서장과 책임자, 지방프랑스은행 부서장과 소속부서장 ;
9.상고법원과 지방법원 판사와 분소판사
10.행정법원과 상고행정법원의 법원장과 판사 ;
11.지방상공회의소와 지방 회계원의 기관장과 심의관 ;
12.상사법원장과 노동쟁의원회 위원장 ;
13.지역지휘권을 갖은 국립헌병장교와 부사관과 집행부관 ;
14.국립경찰 지역지휘권을 갖은 국립경찰과 집행부관;
15.헌병을 제외한 지역지휘권과 행정권을 갖은 군인과 집행부관 ;
16.회계원의 감사권을 갖은 지방복지기관 부서장 ;
17.지방보건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과 사무처장 ;

54)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310&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3일)

18.국립보건기관 기관장과 부서장 ;

19.도단위 화재・구조기관장과 부서장과 요원 ;

20.지방의회・ 코르스(Corse)자치단체・도의외・2만명 이상 주민의 기초단체・2만명 이상 주민의 기초단체 연합・지역연합・시연합・도시의 국장과 부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부서책임자 ;

21.상기(20번)에 명시 된 지역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 된 공공기관의 국장과 부국장과 부서장 ;

22.지방의회 의장실・크로스(Corse)의회의장실・코르스(Corse)지자체집행부의장실・도의회 의장실・주민2만명이상시장실・ 주민2만명이상기초단체연합의장실・지역연합의장실・시연합의장실・대도시장실의 구성원.

- **Code électoral LO132**

- Modifié par LOI organique n°2013-402 du 17 mai 2013 - art. 3 (V)

I.-Les préfets sont inéligibles en France dans toute circonscription comprise en tout ou partie dans le ressort dans lequel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e trois ans à la date du scrutin.

II.-Sont inéligibles en France dans toute circonscription comprise en tout ou partie dans le ressort dans lequel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à la date du scrutin les titulaires des fonctions suivantes :

1° Les sous-préfets, les secrétaires généraux de préfecture, les directeurs de cabinet de préfet et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cabinet de préfet ;

2° Le secrétaire général et les chargés de mission du secrétariat général pour les affaires régionales ou pour les affaires de Corse ;

3° Les directeurs de préfecture, les chefs de bureau de préfecture et les secrétaires généraux de sous-préfecture ;

4° Les directeurs, directeurs adjoints et chefs de service des administrations civiles de l'Etat dans la région ou le département ;

5° Les directeurs régionaux, départementaux ou locaux des finances publiques et leurs fondés de pouvoir ainsi que les comptables publics ;

6° Les recteurs d'académie, les inspecteurs d'académie, les inspecteurs d'académie adjoints

et les inspecteurs de l'éducation nationale chargés d'une circonscription du premier degré ;
7° Les inspecteurs du travail ;
8° Les responsables de circonscription territoriale ou de direction territoriale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l'Etat et les directeurs de succursale et directeurs régionaux de la Banque de France ;
9° Les magistrats des cours d'appel,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t les juges de proximité ;
10° Les présidents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et les magistrats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et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
11° Les présidents de chambre régionale ou territoriale des comptes et les magistrats des chambres régionales ou territoriales des comptes ;
12° Les présidents des tribunaux de commerce et les présidents des conseils de prud'hommes ;
13° Les officiers et sous-officiers de la gendarmerie nationale exerçant un commandement territorial ainsi que leurs adjoints pour l'exercice de ce commandement ;
14° Les fonctionnaires des corps actifs de la police nationale exerçant un commandement territorial ainsi que leurs adjoints pour l'exercice de ce commandement ;
15° Les militaires, autres que les gendarmes, exerçant un commandement territorial ou le commandement d'une formation administrative ainsi que leurs adjoints pour l'exercice de ce commandement ;
16° Les directeurs des organismes régionaux et locaux de la sécurité sociale relevant du contrôle de la Cour des comptes ;
17° Les directeurs, directeurs adjoints et secrétaires généraux des 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
18° Les directeurs généraux et directeur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santé ;
19° Les directeurs départementaux des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et leurs adjoints ;
20° Les directeurs généraux, directeurs généraux adjoints, directeurs, directeurs adjoints et chefs de service du conseil régional,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du conseil départemental, des communes de plus de 20 000 habitants, des communautés de communes de plus de 20 000 habitants, des communautés d'agglomération, des communautés urbaines et des métropoles ;
21° Les directeurs généraux, directeurs généraux adjoints et directeur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ont l'organe délibérant est composé majoritairement de représentant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groupements de collectivités mentionnés au 20° ;

22° Les membres du cabinet du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du président de l'Assemblée de Corse, du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de Corse, du président du conseil départemental, des maires des communes de plus de 20 000 habitants, des présidents des communautés de communes de plus de 20 000 habitants, des présidents des communautés d'agglomération, des présidents des communautés urbaines et des présidents des métropoles.

지방·도의회 의원 입후보제한 공무원 「선거법 L195조」,「2013년 5월 17일 2013-403법 1조와 7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L195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1 (V),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7) [55]

「선거법 L195조」

- 「2013년 5월 17일 2013-403법 1조와 7조」에 따라 개정.

도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공무원 :

1. 최근 3년 동안 해당 도에서 직무했거나 직무 중인 경찰청장 ; 최근 1동안 같은 상황의 경찰지청장·경찰청사무처장·경찰청장부속실 부서장 또는 경찰청장의 미션을 받은 지청장 또한 경찰지청의 선임사무장 ;
2.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할지역의 상고검사국과 법원의 법조인 ;
3.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문 중인 관할지역의 행정법원 구성원 또는 판사와 회계원 지청 사무처장 ;
4.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할지역의 지방법원 판사 ;
5.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지역 지휘부의 관할 지역의 육·해·공군 장교 ;
6.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기초선거구의 국립경찰 ;
7.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공공토목공사의 선임감독관, 차석감독관, 감독관 ;
8.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기초선거구 내의 광산 상근업무 감독관 ;
9.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교육청의 관할 도의 교육감 ;
10.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교육청 장학사와 초등교육 장학사 ;
11.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모든 공공예산 집행과 직·간접 과세와 납세 및 징수를 위한 공무원 신분의 회계사와 직원 및 고용인 ;
12.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우편과 통신의 도지부장과 주요 감독관 ;
13. 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담배제조공장의 선임기술관, 감독관과 담배 판매와 문화업무 부서장 ;

5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459&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3일)

14.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기초 선거구의 산림·상수·도시계획·건설 선임기술관, 차석기술관, 기술관과 기타 직원 ;

15.최근 1년 동안 근무핶거나 근무 중인 기초 선거구의 측량기구 감독관 ;

16.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사회·보건 활동의 도책임자와 감독관 ;

17.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도의 국가민간행정의 지역책임자와 선임직원 ;

18.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선거구의 도·지방의회 의장실 구성원, 도·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업무 책임자들 ;

19.최근 1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의회와 코르스(Corse)자치단체 의장실 구성원들, 코르스(Corse)지방자치단체와 남코르스와 북코르스 도의 공공기관의 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분과 책임자.

상기명시 된 2항에서 19항까지의 기간은 선거일에 퇴직권리 행사가 허용 된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Code électoral L195

-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1 (V)
-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7

Ne peuvent être élus membres du conseil départemental :

1° Les préfets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e trois ans ; les sous-préfets, secrétaires généraux, directeurs de cabinet de préfet ou sous-préfets chargés de mission auprès d'un préfet, ainsi que les secrétaires en chef de sous-préfecture,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e année ;

2° L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 des cours d'appel,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depuis moins d'un an ;

3° Les membres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ainsi que les magistrats et les secrétaires généraux d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depuis moins d'un an ;

4° Les magistra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t d'instance,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depuis moins d'un an ;

5° Les officiers des armées de terre, de mer et de l'air dans l'étendue de toute circonscription comprise dans le ressort où, dotés d'un commandement territorial, ils ont exercé leur autorité depuis moins d'un an ;
6° Les fonctionnaires des corps actifs de police dans les cantons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7° Dans les départements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les ingénieurs en chef, ingénieurs en chef adjoints et ingénieurs des ponts et chaussées ;
8° Les ingénieurs du service ordinaire des mines, dans les cantons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9° Les recteurs d'académie, dans tous les départements compris dans l'académie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depuis moins d'un an ;
10° Les inspecteurs d'académie et les inspecteurs de l'enseignement primaire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1° Les agents et comptables de tout ordre agissant en qualité de fonctionnaire, employés à l'assiette, à la perception et au recouvrement des contributions directes ou indirectes, et au paiement des dépenses publiques de toute nature,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2° Les directeurs départementaux et inspecteurs principaux des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3° Les ingénieurs en chef chargés de la direction d'un établissement du service des manufactures de tabac, les inspecteurs des manufactures de tabac et les directeurs du service de la culture et des magasins de tabac,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4° Les ingénieurs en chef, ingénieurs principaux, ingénieurs des travaux et autres agents du génie rural, des eaux et des forêts dans les cantons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5° Les inspecteurs des instruments de mesure dans les cantons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6° Les directeurs départementaux et inspecteurs de l'action sanitaire et sociale dans le départemen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7° Les directeurs et chefs de service régionaux des administrations civiles de l'Etat dans les départements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8° Les membres du cabinet du président du conseil départemental et du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les directeurs généraux, les directeurs, les directeurs adjoints, les chefs de service et les chefs de bureau de conseil départemental et de conseil régional dans la circonscription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un an ;
19° Les membres du cabinet du président de l'Assemblée et les membres du cabinet du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de Corse, les directeurs généraux, les directeurs, directeurs adjoints, chefs de service et chefs de burea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et de ses établissements publics dans les départements de la Corse-du-Sud et de la Haute-Corse, s'ils y exercent leurs fonctions ou les ont exercées depuis moins d'un an.

Les délais mentionnés aux troisième (2°) à vingtième (19°) alinéas ci-dessus ne sont pas opposables aux candidats qui, au jour de l'élection, auront été admis à faire valoir leurs droits à la retraite.

기초단체장 및 위원 입후보제한 공무원「선거법 L231조」,「2013년 5월 17일 N°2013-403법 22조」에 따라 개정. (Code électoral Article L231,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22 (V)) [56]

- 「선거법 L231조」
  - 「2013년 5월 17일 N°2013-403법 22조」에 따라 개정

최근 3년간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최근 1년간의 경찰지청장, 경찰청사무처장, 경찰청장 부속실 부서장, 경찰청장의 미션을 받은 지청장, 코르스(Corse)지자체 정무 또는 지방 정무 미션을 받은 사무처장은 피선거권이 없다

최근 6개월 간 해당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했거나 직무 중인 아래와 같은 공무원은 기초단체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1.상고법원 판사;
2.행정법원과 회계원지방분소 위원;
3.지방지휘관할권내의 기초단체의 육·해・공군 장교 ;
4.지방법원의 판사 ;
5.현역국립경찰 ;
6.공무원신분의 기초단체 공금의 회계사와 기초단체에 서비스를 제공 기업주 ;
7.경찰청 부서장과 부서책임자와 경찰지청의 선임사무장 ;
8.지방의회・도의회・코르스(Corse) 또는 귀이안(Guyane) 또는 마르티니끄(Martinique)지방자치단체・독립재정기초단체협의기관과 관련 공기관에서 국장과 부국장, 부서장과 부부서장, 과장과 책임자 그리고 집행부 의장과 의회의장과 기관장의 전결권을 위임 받은 부속실의 실장・부실장・부서장・부부서장・부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9.지방철도업무관련자 : 선임기술감독관, 분과기술감독관과 국가토목공사감독관, 국가토목공사 주요분과 책임자와 분과 책임자.

기초단체 직원은 고용된 기초단체에 피선거권이 없다. 공무원신분과 독립직업군과 집행업무에 따른 기초단체의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민 1 000이하의 기초단체의 비정규직 고용자들은 제외된다.

56)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idArticle=LEGIARTI000006353550&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상기 명시 된 기간은 선거일에 퇴직권리 행사가 허용된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Code électoral Article L231

- Modifié par LOI n°2013-403 du 17 mai 2013 - art. 22 (V)

Ne sont pas éligibles dans le ressor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e trois ans les préfets de région et les préfets, depuis moins d'un an les sous-préfets, les secrétaires généraux de préfecture, les directeurs de cabinet de préfet, les sous-préfets chargés de mission auprès d'un préfet et les secrétaires généraux ou chargés de mission pour les affaires régionales ou pour les affaires de Corse.

Ne peuvent être élus conseillers municipaux dans les communes situées dans le ressort où ils exercent ou ont exercé leurs fonctions depuis moins de six mois :

1° Les magistrats des cours d'appel ;

2° Les membres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

3° Les officiers des armées de terre, de mer et de l'air, dans les communes comprises dans le ressort de leur commandement territorial ;

4° Les magistra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t d'instance ;

5° Les fonctionnaires des corps actifs de la police nationale ;

6° Les comptables des deniers communaux agissant en qualité de fonctionnaire et les entrepreneurs de services municipaux ;

7° Les directeurs et les chefs de bureau de préfecture et les secrétaires en chef de sous-préfecture ;

8° Les personnes exerçant, au sein du conseil régional, du conseil départemental,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de Guyane ou de Martinique, d'un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à fiscalité propre ou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les fonctions de dir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directeur général adjoint des services, directeur des services, directeur adjoint des services ou chef de service, ainsi que les fonctions de directeur de cabinet, directeur adjoint de cabinet ou chef de cabinet en ayant reçu délégation de signature du président, du président de l'assemblée ou du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

9° En tant que chargés d'une circonscription territoriale de voirie : les ingénieurs en chef, ingénieurs divisionnaires et ingénieurs des travaux publics de l'Etat, les chefs de

section principaux et chefs de section des travaux publics de l'Etat.

Les agents salariés communaux ne peuvent être élus au conseil municipal de la commune qui les emploie. Ne sont pas compris dans cette catégorie ceux qui, étant fonctionnaires publics ou exerçant une profession indépendante, ne reçoivent une indemnité de la commune qu'à raison des services qu'ils lui rendent dans l'exercice de cette profession, ainsi que, dans les communes comptant moins de 1 000 habitants, ceux qui ne sont agents salariés de la commune qu'au titre d'une activité saisonnière ou occasionnelle.

Les délais mentionnés aux alinéas ci-dessus ne sont pas opposables aux candidats qui, au jour de l'élection, auront été admis à faire valoir leurs droits à la retraite.

군인직위일반에 관한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LOI n° 2005-270 du 24 mars 2005 portant statut général des militaires)[57]

▪ 군인직위일반에 관한 「2005년 3월 24일 n° 2005-270법」

3조.
군인은 시민에게 보장 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들 중 어떤 것들은 본 법이 정한 조건에서 금지되거나 제한한다.

4조.
특히 철학적 또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견 또는 신념의 자유가 있다.
반면, 이 자유는 공무 외에 그리고 군인신분이 요구하는 유보조항 준수 하에 표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모든 표현 방식에 적용한다. 이는 군부대와 군함에서 자유로운 예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방비밀과 직업상 비밀 위반에 관련 된 형법 규정과는 별개로, 군인은 직책수행 중 혹은 직책을 통해 알게 된 정보와 문서의 모든 사실에 대해 신중함을 보여야만 한다. 본 법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은 소속 상부기관의 구체적인 결정으로만 이 의무가 면제된다.
모든 통신과 전자통신 방식의 사용은 작전 중의 군인의 보호 또는 미션집행 또는 군사작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 혹은 제한 할 수 있다.

5조.
현역 군인은 정치적 성격을 띈 단체 혹은 협회에 가입을 금한다.
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제한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인은 모든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에 정한 정당가입 금지는 선거기간 동안 유보된다. 선출과 공직 수락의 경우, 임기동안 유보가 연장된다.
선출 후 공직을 수락한 군인은 51조가 정한 파견보직으로 분류된다.

▪ LOI n° 2005-270 du 24 mars 2005 portant statut général des militaires

Article 3

57)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808186&categorieLien=id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Les militaires jouissent de tous les droits et libertés reconnus aux citoyens. Toutefois, l'exercice de certains d'entre eux est soit interdit, soit restreint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présente loi.

Article 4

Les opinions ou croyances, notamment philosophiques, religieuses ou politiques, sont libres.

Elles ne peuvent cependant être exprimées qu'en dehors du service et avec la réserve exigée par l'état militaire. Cette règle s'applique à tous les moyens d'expression. Elle ne fait pas obstacle au libre exercice des cultes dans les enceintes militaires et à bord des bâtiments de la flotte.

Indépendamment d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relatives à la violation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t du secret professionnel, les militaires doivent faire preuve de discrétion pour tous les faits, informations ou documents dont ils ont connaissanc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En dehors des cas expressément prévus par la loi, les militaires ne peuvent être déliés de cette obligation que par décision expresse de l'autorité dont ils dépendent.

L'usage de moyens de communication et d'information, quels qu'ils soient, peut être restreint ou interdit pour assurer la protection des militaires en opération, l'exécution de leur mission ou la sécurité des activités militaires.

Article 5

Il est interdit aux militaires en activité de service d'adhérer à des groupements ou associations à caractère politique.

Sous réserve des inéligibilités prévues par la loi, les militaires peuvent être candidats à toute fonction publique élective ; dans ce cas, l'interdiction d'adhésion à un parti politique prévue par le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st suspendue pour la durée de la campagne électorale. En cas d'élection et d'acceptation du mandat, cette suspension est prolongée pour la durée du mandat.

Les militaires qui sont élus et qui acceptent leur mandat sont placés dans la position de détachement prévue à l'article 51.

군인정당가입 금지와 선출직공직 출마 관련 규정 (「국방법 L4121-3조」[58])

「2008년 5월 26일 2008-493법 3조」에 따라 개정.

현역군인은 정치성향을 가진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인은 모든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다 ; 이 경우, 첫 항에 명시 된 정당가입금지는 선거기간 동안 효력이 중지된다. 선출과 선출직 수락 시, 임기동안 효력중지가 연장 된다.

선출되고 선출공직을 수락한 군인은 L 4138-8조에 명시 된 파견 신분으로 분류된다.

Code de la défense - Article L4121-3

Modifié par LOI n°2008-493 du 26 mai 2008 - art. 3
Il est interdit aux militaires en activité de service d' adhérer à des groupements ou associations à caractère politique.

Sous réserve des inéligibilités prévues par la loi, les militaires peuvent être candidats à toute fonction publique élective ; dans ce cas, l' interdiction d' adhésion à un parti politique prévue au premier alinéa est suspendue pour la durée de la campagne électorale. En cas d' élection et d' acceptation du mandat, cette suspension est prolongée pour la durée du mandat.

Les militaires qui sont élus et qui acceptent leur mandat sont placés dans la position de détachement prévue à l' article L. 4138- 8.

58) 「국방법 L4121-3조」, 「2008년 5월 26일 2008-493법 3조」에 따라 개정. (Code de la défense – Article L4121-3, Modifié par LOI n°2008-493 du 26 mai 2008 – art. 3)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1307&idArticle=LEGIARTI000018882506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사법관직위 일반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 n° 58-1270 명령법」(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59]

▪ 사법관직위 관련 조직법을 담은 「1958년 12월 22일 n° 58-1270 명령법」

8조.
사법관직책수행과 모든 공직과 기타 모든 경제활동 혹은 급여수령 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원장의 결정으로 판사들에게 전문분야에 대해 교육활동이나 현행법이 규정한 경우인 중재활동을 제외한, 판사의 품위와 독립성 저해하지 않는 모든 활동 또는 직책을 수행을 개인적 예외 규정으로 정한다.
사법관은 사전허락 없이 과학적, 문학 또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9조.
사법관직책수행과 의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경제·사회·환경 위원회 선출공직, 또한 뉴벨-칼레도니(la Nouvelle-Calédonie)지방의회 또는 합동의회의 구성원, 프랑스령 폴로네지(la Polynésie française)의 집행부위원, 월리섬과 퓌뛰나(îles Wallis et Futuna) 자치의회 구성원, 생바르테레미(Saint-Barthélemy) 지자체 집행부위원, 생마르텡(Saint-Martin) 지자체 집행부위원, 생-삐에르-에-미끄롱 (Saint-Pierre-et-Miquelon) 지자체 위원 또는 뉴벨-깔레도니(Nouvelle-Calédonie) 정부와 프랑스령 폴로네지(la Polynésie française) 정부의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
어떤 사법관도 배우자가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인 도의 전체 혹은 일부가 사법권한에 속한 곳에 임명될 수 없다.
또한 사법관직책수행과 자신이 사법관할 지역이거나 배속 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위원, 도 집행부위원, 시 집행부위원 또는 구 집행부위원, 파리시 집행부위원, 리옹(Lyon)시 위원, 코르스(Corse)의회 의원, 귀이얀(Guyan) 의회위원 또는 마르티니끄(Martinique) 의회의원 등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최근 5년 동안 선출공직을 수행했거나 최근 3년 동안 유럽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현 조항이 제시된 선출공직후보자로 출마했던 사법관할지역에 사법관으로 임명되거나 사법관으로 재직할 수 없다.
상기 3항은 파기법원 사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9)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39259 (검색일. 2016년 11월 3일)

10조
사법기구에 모든 정치적 의결을 금한다.
공하국정부의 원칙 또는 구성을 비판적인 모든 표현, 같은 맥락에서 직책에 따른 유보의무에 위배되는 정치적 성질의 모든 표현을 금한다.
또한 재판권 작용을 방해하거나 중지시키는 성질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한다.

▪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Article 8
Modifié par Loi n°2001-539 du 25 juin 2001 - art. 14 JORF 26 juin 2001
L'exercice des fonctions de magistrat es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toutes fonctions publiques et de toute autr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alariée.
Des dérogations individuelles peuvent toutefois être accordées aux magistrats, par décision des chefs de cour, pour donner des enseignements ressortissant à leur compétence ou pour exercer des fonctions ou activités qui ne seraient pas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a dignité du magistrat et à son indépendance, à l'exception des activités d'arbitrage, sous réserve des ca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en vigueur.
Les magistrats peuvent, sans autorisation préalable, se livrer à des travaux scientifiques, littéraires ou artistiques.

Article 9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12
L'exercice des fonctions de magistrat es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un mandat au Parlement, au Parlement européen ou a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ainsi que de membre du congrès ou d'une assemblée de province de la Nouvelle-Calédonie, de représentant à l'assemblé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de membre de l'assemblée territoriale des îles Wallis et Futuna, de conseiller territorial de Saint-Barthélemy, de conseiller territorial de Saint-Martin ou de conseiller territorial de

Saint-Pierre-et-Miquelon ou avec la fonction de membre du gouvernement de la Nouvelle-Calédonie ou du gouvernement de la Polynésie française.
Nul ne peut être nommé magistrat ni le demeurer dans une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e trouve tout ou partie du département dont son conjoint est député ou sénateur.
L'exercice des fonctions de magistrat est égal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un mandat de conseiller régional, de conseiller départemental, de conseiller municipal ou de conseiller d'arrondissement, de conseiller de Paris, de conseiller de la métropole de Lyon, de conseiller de l'Assemblée de Corse, de conseiller de l'Assemblée de Guyane ou de conseiller de l'Assemblée de Martinique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à laquelle appartient ou est rattaché le magistrat.
Nul ne peut être nommé magistrat ni le demeurer dans une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il aura exercé depuis moins de cinq ans, une fonction publique élective visée au présent article ou fait acte de candidature à l'un de ces mandats, à l'exception du mandat de représentant au Parlement européen, depuis moins de trois ans.
Les dispositions des trois alinéas qui précèdent ne s'appliquent pas aux magistrats de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10
Créé par Ordonnance 58-1270 1958-12-22 JORF 23 décembre 1958, rectificatif JORF 5 février 1959
Toute délibération politique est interdite au corps judiciaire.
Toute manifestation d'hostilité au principe ou à la forme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est interdite aux magistrats, de même que toute démonstration de nature politique incompatible avec la réserve que leur imposent leurs fonctions.
Est également interdite toute action concertée de nature à arrêter ou entraver le fonctionnement des juridictions.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 관계법규

○ 호주 공무원(public servants)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정권의 공무원이 일반선거의 입후보할 때에는 공무원 직에 사직을 먼저 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60].

○ 호주 연방공무원의 행동강령지침(Australian Guidelines on Official Conduct of Commonwealth Public Servants)에서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정치 활동참여는 허용하고 있으며 정당원이 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의해야할 상황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1)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정치단체에 소속되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2) 정치활동을 하는 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중요활동원인 경우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공적 물품을 사용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음.

○ 그 외에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관한 중요한 법으로, 「공무원규제조항(Public Service Regulations 1999)」, 「범죄통제법(the Crimes Act

60) 선거정보네트워크(Th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선거 중 공무원과 장관의 행동강령(Conduct during Elections for Civil Servants and Ministers)에서 호주편 참고. http://aceproject.org/electoral-advice/archive/questions/replies/915147317 검색일자: 2016년 10월.

1914)」, 「국회의원법(Members of Parliament(Staff) Act 1984)」가 있으며,[61]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이하 APS)에서는 공무원에 허용하는 행동을 큰 주제에 따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호주공무원위원회 홈페이지[62]

○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22조와 「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35조에서는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이하 AEC)에 소속된 모든 근무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모든 근무자들은 호주선거위원회(AEC)에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되며[63] 위 조항은 호주선거위원회(AEC)에 임시적인 고용상태를

61) 장관, 고문, 공무원의 활동규제(Regulating the Behaviour of Ministers, Special Advisers and Civil Servants), 2003, The Constitution Unit, 24p, 검색일자: 2016년 10월.

62) 호주공무원위원회 홈페이지 첫화면, 출처: http://www.apsc.gov.au/

유지하는 사람에게도 해당함.

○ 호주공무원 가치(Australia Public Service Values, 이하 APS Values)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서도 공무원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치우지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주공무원 가치 호주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전문가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호주공무원 행동강령 ⅰ) 호주공무원이 업무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하여 행동해야한다. ⅱ) 호주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중에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를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ⅲ) 호주공무원이 연방에 속한 자원을 사용할 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여야한다. APS Values The APS is apolitical, performing its functions in an impartial and professional manner. APS Code of Conduct ⅰ) An APS employee, when acting in the course of APS employment, must treat everyone with respect and courtesy, and without harassment. ⅱ) An APS employee must disclose, and take reasonable steps to avoid, any conflict of interest (real or apparent) in connection with APS employment. ⅲ) An APS employee must use Commonwealth resources in a proper manner.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SECT 35 Employment of additional staff, consultants etc. (1) The Commission may,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employ, under agreements in writing: (a) such temporary staff as the Commission think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i) the conduct of an election, referendum, ballot or Roll review; or (ii) the conduct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7(1)(c); and (b) such senior executive staff as the Commission thinks necessary to assist the

63) 호주선거위원회(AEC), 호주선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정책(Political Neutrality in the AEC), People service branch, April 2016,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u5IDTmfvPAhWIrJQKHY5jClEQFgghMAA&url=http%3A%2F%2Fwww.aec.gov.au%2Femployment%2Fe2016%2Ffiles%2Fpolitical-neutrality-policy.pdf&usg=AFQjCNHGBy0ej1if8TNWIVMwd2Q4tAYoYw, 3p. 검색일자: 2016년 10월.

Commission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otherwis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The Commission may,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engage, under agreements in writing, persons having suitabl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s consultants to, or to perform services for, the Commission.
(3)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persons employed under subsection (1) are such as are from time to tim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4)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ngagement of persons engaged under subsection (2) are such as are from time to tim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나. 공무원 정치활동

○ 다른 국가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공문서 위조로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제를 받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금지되어 있는 정책입안에 대한 대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품수수, 정치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지 않음.

	Australia	Canada	Ireland	New Zealand	UK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unauthorised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	✓	✓	✓
Exercising influence in return for inducements		✓	✓	✓	✓
Prohibition of accepting gifts/benefits				✓	✓
Restriction on political activity			✓		
Making false statements to mislead officials; falsifying public documents	✓	✓	✓	✓	✓

[표] 각국의 공무원 정치활동의 허용사항과 제한사항의 비교[64]

64) 장관, 고문, 공무원의 활동규제(Regulating the Behaviour of Ministers, Special Advisers and Civil Servants), 2003, The Constitution Unit, 17p 재인용, 출처: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2003. Defining the Boundaries within the Executive: Ministers, Special Advisers and the permanent Civil Service.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검색일자:2016년 10월.

1) 정당의 당원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 호주공무원이 일반적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허용됨.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사무소를 갖는 것이 허용되며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한 부처에서 내어 놓는 정책이슈에 대해서 개인의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음[65].

- 하지만 공무원이 특정이슈에 대해 한 정당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공무원이 특정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홍보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맡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연방차별금지법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호주선거위원회(AEC)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받게 되며 고용계약을 맺을 때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선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66].

- 업무특성상 모든 선거위원회 인력충원과 선발 기준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민감성을 요구함. '정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자 혹은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호주선거위원회가 추구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 가치를 해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에 고용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기준조항이 있음.

---

65)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7p, 검색일자: 2016년 10월.

66)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7p, 검색일자: 2016년 10월.

2) 정치활동(선거운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

○ 호주선거위원회조약(AEC Enterprise Agreement 2011) 6.1조에서 호주선거위원회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됨. 또한 선거위원회에서 고용관계를 맺을 모든 근로자는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위 의무조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함.

-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선거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더욱더 유지해야함. 선거위원회의 인력충원공고, 선발 기준, 직무기술서에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조항을 포함하여야함.

3) 공무원의 정치활동[67]

가) 허용되는 행위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님.

- 정치적 내용이 아닌 범위 한에서,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관, 혹은 통상조합에 속해있거나 활동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노조가입을 결정할 자유가 있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조 가입여부 혹은 참여 가능한 노조활동

67) 호주선거위원회(AEC), 호주선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정책(Political Neutrality in the AEC), People service branch, April 2016,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u5IDTmfvPAhWIrJQKHY5jClEQFgghMAA&url=http%3A%2F%2Fwww.aec.gov.au%2Femployment%2Fe2016%2Ffiles%2Fpolitical-neutrality-policy.pdf&usg=AFQjCNHGBy0ej1if8TNWIVMwd2Q4tAYoYw, 4p. 검색일자: 2016년 10월.

범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음. 하지만 호주공무원가치(APS Values), 공무원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범위 안에서 대중여론 또한 고려하여야 함[68].

○ 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때 그 활동범위는 다양한데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해당 정치활동과 공무원 의무를 지키는데 이익상충이 있을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직, 업무조정, 업무위임을 하거나 정치활동에서 덜 중요한 업무를 맡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69].

○ 공무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가치와 행동강령 사이에 혹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상황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의사결정모델(Decision-making model)을 제시함.

RE 1. 숨겨져있는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라 (Recognise a potential issue of problem)	두가지 이상의 가치중에 혹은 개인의 가치와 공무원의 가치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갈등관계에 부딪힌 경우 사용.
F 2. 관련 정보를 모아라(Find relevant information)	일어난 상황의 원인, 관련된 법적 가이드라인과 정책함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선례를 찾아봐야함.
L 3. 의견의 갈림길에서 공을 들여 살펴라 (Linger at the 'Fork in the Road')	감독관, 담당자, 동료들에게 듣고 이야기 한 것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볼 것.
E 4. 여러 옵션을 잘 따져라(Evaluate the options)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비현실적인 선택지는 버리고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선별할 것.

68)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9p, 검색일자: 2016년 10월.

69)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8p, 검색일자: 2016년 10월.

C 5. 선택하라(Come to a decision)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록해둘 것.
T 6.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라(Take time to reflect)	결정한 시점에서 다시 배울 것을 찾을 것.

[표] REFLECT: 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에 의한 의사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70])

-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그 원인과 법적,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 그 선례를 모두 모은 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위험요소와 비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거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차례대로 나타낸 것임.

나) 제한·금지되는 행위

❍ 공무원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동이 엄격히 금지됨.

- 연방, 주, 준주 선거에서 정당 혹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의 경우, 예를 들어 방송매체 연설, 후보자카드(how-to-vote) 배포, 인터넷에서 의견 개진하는 행위
- 연방, 주, 준주 선거에서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예를 들어 언론매체에 투고, 정치연설에 참여,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

70) 호주공무원위원회 홈페이지, 공무원 가치와 행동강령에 의한 의사결정모델(Decision-making model) 설명하는 부분 정리, http://www.apsc.gov.au/publications-and-media/current-publications/reflect 검색일자: 2016년 10월.

- 소셜 미디어에 호주선거위원회 근로자임을 드러내면서 게시물을 올리거나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공개적인 글을 쓰는 행위
- 일반인이 보기에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정당 혹은 후보자와 관련되어 정기적으로 공개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가의 입장, 관련이슈, 중요판례 등

○ 선거기간 후 정권 내각이 세워지기 전까지 호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더 요구되는 '관리규약(Caretaker Conventions)'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음. 이는 하원의원선거 전 기간 동안 교체되는 정권이 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임[71].

-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공무원에게 정보 혹은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호주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연방에 속해있는 자원을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유용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체를 도울 수 있게 함임.
- 또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일상적 절차는 계속 유지 되며 정권교체에 관련된 절차는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됨.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의문이 생긴 경우 상부관리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함.

71)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1.13 선거기간(Election period),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12p, 검색일자: 2016년 10월.

[그림] '관리규약(Caretaker Conventions)'에 대한 가이드북[72]

○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다수에게 손쉽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생겼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의 의무 때문에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까지도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Bennett v President [2003] 판례에서는 세관 공무원이자 세관연합 회회장이었던 피터 베넷(Peter Bennett)이 라디오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미디어매체에 공개하여 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음[73].
- Banerji v Bowels [2013] 판례에서도 이민성 공무원이었던 마이클

72) 호주 총리내각부 홈페이지, 관리규약(Caretaker Conventions)을 설명한 가이드북 첨부파일, http://www.dpmc.gov.au/resource-centre/government/guidance-caretaker-conventions 검색일자: 2016년 10월,

73) 캔버라타임즈 뉴스기사, '공무원들의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Public servants as 'silent members of society' The creeping encrouchments on freedom of speech. ' http://www.canberratimes.com.au/national/public-service/public-servants-as-silent-members-of-society-the-creeping-encrouchments-on-freedom-of-speech-20151030-gknh1g.html 검색일자:2016년 10월.

바널지(Michael Banerji)가 개인 트위터 계정에 난민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인터넷 활동을 감시 받았음. 하지만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할 권리라는 바널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74].

2. 공무원 입후보제한 및 사직기한

가. 관계 규정

○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44조에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나열해놓았는데 그 중 직·간접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연방 공무원 경우도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입후보하기 전에는 미리 사직해야함.

호주 헌법 44조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ⅰ) 국외의 결정에 따라야 하거나 해외 시민권자, 혹은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 혹은 ⅱ) 연방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형이 부여된 자, 반역죄로 처벌을 받거나 1년 이상 구금된 자; 혹은 ⅲ) 파산선고 받은 자; 혹은 ⅳ) 영연방국 하에서 일을 하거나 영연방의 수입을 담당하는 자; 혹은 ⅴ) 연방의 공무원으로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Sect44

74) 월드소셜리스트(World Socialist) 뉴스 기사, 호주공무원이 정책 비판으로 해고위험에 놓였다(Australian Public servant faces dismissal for criticising refugee policies),https://www.wsws.org/en/articles/2013/08/23/free-a23.html 검색일자: 2016년 10월.

Disqualification Any person who: (i) is under any acknowledgment of allegiance, obedience, or adherence to a foreign power, or is a subject or a citizen or entitled to the rights or privileges of a subject or a citizen of a foreign power; or (ii) is attainted of treason, or has been convicted and is under sentence, or subject to be sentenced, for any offence punishable under the law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longer; or (iii) is an undischarged bankrupt or insolvent; or (iv) holds any office of profit under the Crown, or any pension payable during the pleasure of the Crown out of any of the revenues of the Commonwealth; or (v) has any direct or indirect pecuniary interest in any agreement with the Public Service of the Commonwealth otherwise than as a member and in common with the other members of an incorporated company consisting of more than twenty-five persons; shall be incapable of being chosen or of sitting as a senator or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Sykes v. Cleary [1992] 판례에서 대법원은 헌법 44(iv)조의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의 결격사유 조항에서 주와 연방 공무원 단어를 삭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Free v. Kelly((No.2)[1996] 판례에서는 후보자 지명하는 때에는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호주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은 영연방의 이해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음[75].

75)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8p, 검색일자: 2016년 10월.

나. 입후보제한 공무원 및 사직기한[76]

○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32조에서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가 된 호주선거위원회 근로자는 후보자 지명 받는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사직해야하며, 공무원규제(The Regulations) 3. 13.에서 3. 15.에는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선거 결과가 나오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 다시 공무원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적시하고 있음[77].

- 이 규정에 해당하는 선거는 연방과 주 국회의원 선거, 호주수도준주(ACT)와 북부준주(NT) 선거, 애보리진 법안(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ct 2005)하의 선거[78]가 해당함.
- 선거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공무원 직무로 돌아올 때 계급, 의무사항, 업무조건, 보수 사임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이 아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하지 않았더라면 고용관계가 끝나지 않은 경우와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선거에 실패한 경우 복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79].

---

76) 호주선거위원회(AEC), 호주선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정책(Political Neutrality in the AEC), People service branch, April 2016,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u5IDTmfvPAhWIrJQKHY5jCIEQFgghMAA&url=http%3A%2F%2Fwww.aec.gov.au%2Femployment%2Fe2016%2Ffiles%2Fpolitical-neutrality-policy.pdf&usg=AFQjCNHGBy0ej1if8TNWIVMwd2Q4tAYoYw, 5p. 검색일자: 2016년 10월.

77)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9p, 검색일자: 2016년 10월.

78) Torres Strait Regional Authority member or zone election

79) 호주공무원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설명부분 참조http://www.apsc.gov.au/managing-in-the-aps/recruitment-and-selection/reengagement-candidate 검색일자: 2016년 10월.

공무원법 32조
선거후보자의 복직에 관한 권리

(1)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되는데,
(a) 11A(1)조에 따라 장관에 따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공무원에서 퇴직한 자;
(b) 후보자 지명 마감 시간 전 6개월 이내에 사직한 자;
(c) 선거 후보자가 선거에서 진 자.
(2) 11A(1)조에 따라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호주 공무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Public Service Act
32 Right of return for election candidates
(1) This section applies to a person if:
(a) the person resigned as an APS employee in order to contest an election specified in Commissioner's Directions issued under subsection 11A(1); and
(b) the resignation took effect not earlier than 6 months before the closing date for nominations; and
(c) the person was a candidate in the election but failed to be elected.
(2) The person is entitled to be again engaged as an APS employee,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er's Directions issued under subsection 11A(1) and within the time limits provided by those Directions.

○ 호주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나오기 위해 사직할 필요 없음. 지방정부 공무원이 되거나 집권당이 되는 경우, 지방정부 직무가 원래 맡고 있던 직무와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관련된 이슈를 미리 검토한 후 시작해야함[80].

80)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s Commission), 호주공무원가치와 행동강령 실례(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Sect4.15 시민으로서의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www.apsc.gov.au/__data/assets/word_doc/0015/51423/APS-Values.docx 99p, 검색일자: 2016년 10월.